

5 주요예산 집행결과

5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■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순창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405,696	2,257	0.56	
일반운영비		1,390	0.34	
여 비		411	0.1	
업무추진비		319	0.08	
직무수행경비		95	0.02	
자산취득비		42	0.01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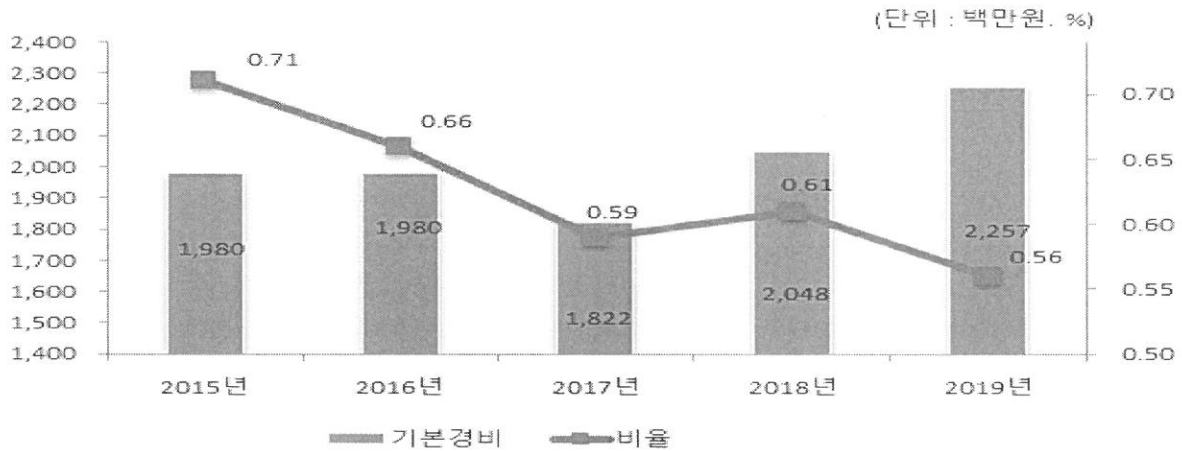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- ▶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(201-01)+공공운영비 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 (202-01)+월액여비 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 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 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(405-01)

☞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세출결산액	278,554	301,311	307,798	336,597	405,696
기본경비	1,980	1,980	1,822	2,048	2,257
비율	0.71	0.66	0.59	0.61	0.56

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

☞ 기본경비는 전체 세출예산액 중 1% 이하로 적은편이며 2018년 대비 0.05%p 감소함

5-2.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

☐ 우리 순창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,125m²이 적습니다.

(단위 : m²)

순창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	순창군 공공청사 기준면적*	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
6,400	7,525	-1,125

*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,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